



문서번호 : 10-04사무-21
수 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장연희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전송일자 : 2010년 4월 29(목)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매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무효확인 소송 소송인단(강경문 외 199명)은 2010. 4. 29. 오전, “평택 미공군기지(K-55)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현재 발표된 미 군 자료에 의하면 평택 미 군기지(K-55)내 2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 2활주로 지에 있는 기존의 군사시설인 패트리엇 미사일, 발칸포, 레이더 시설 등을 기지의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사업이며, 2단계는 현재의 활주로 북쪽에 이와 평행한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한미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미측이 사업을 기하면 합참을 중심으로 사업관련 서에서 기된 사업계획을 검토·심의한 후 국방 장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 국방 장관의 승인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혀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주한미군기지 이 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승인하 습니다.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위에서 한 1단계 사업인 기지내의 시설 을 활주로의 북쪽으로 이 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 의 설 이므로 평택특별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시 시하여 합니다. 한 2단계 사업인 2활주로 건설은 국방·군사시설에 해 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하여 합니다. 2활주로는 건설 으로 인하여 인 주 들이 입 되는 소음 해가 것은 약관 합니다.

재, 그 에도 하고 2활주로 건설사업은 지 주 은 , 시 의를 도 법이 정하고 있는 평택시와의 의도 혀 지 않은 일방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 한 위 사업은 한·미 의 토지 력계획(LPP 정)을 위 한 것입니다. 위 사업을 위해 시설 이 이 되는 기지 북쪽 은 LPP 정에 의해 지 으로 미군에 여된 것입니다. 그 에도 하고 그 여 과 리 군사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합니다.

그 에도 하고 국방 장관은 이에 한 아 검토없이 CDIP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여 을 행하 습니다.

3. 이에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서] 국내법을 시한 평택 미 군기지(K-55) 2활주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 . (3p)

[소장] (5p)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성명서]

국내법을 무시한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1. 국방부는 방위 지원 중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K-55) 내에 기존 활주도와 평행한 2활주로 건설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2활주로 건설은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에 따라 한국이 미7군이 이용하는 평택 미 공군기지(K-55) 내 2활주로를 건설한 후, 이를 미국에 대여하는 사업으로, 한국에 의해 건설되는 주한미군시설사업에 하여는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것이다.

3. 따라서 국내법이 정하는 법한 절차를 지어 아니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승인 등 행정처리는 그 하자가 중, 하므로 것이다.

그 예도 하고 국방부는 2활주로 건설사업에 하여 국내법이 정하는 사항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지어 아니므로 평택 미 공군기지 인지에서 주를 하는 주들의 의견을 수렴, 영시키는 것 자를 원으로 하 다. 인 주 주 들에 2활주로 건설사업에 하여 아 정보도, 의 수 도 하지 아니한 상에서 그 어 한 한 고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2활주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인 주 들의 , 건강 등 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로 측 수도, 이를 미연에 방지 수 없 되 다.

4. 국방부는, 2활주로 건설사업에 하여 평택 미 공군기지의 을 고하고 한 도 방위 지에 기여 것이 고 한다. 그러 , 미국이 주한미군의 연 을 하는 가운데 이에 평택 미공군기지 장 및 시 환 이 진행되는 상에서, 2011 을 표로 시행되고 있는 2활주로 건설사업 한 한 도 방위의 에서 어 계 에 입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와 기 을 의 연 을 하기 위한 것이 것이다.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그 다면 이는 한 도 방위의 위 내에서 한국 영토 내의 토지와 시설의 여를
정한 한미상 방위 약을 위 한 것이 된다.

5. 따 서 이처 국내법이 정한 를 시한 인 주 들의 , 건강 등 해를
혀 고 았고, 아가 주한미군의 연 을 현 으로 진되고 있는
2활주로 건설 사업은 위법 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 것을 한다.

2010. 4. 2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 무효확인소송 소송인단
(강경문 외 199명)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
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소 장

원 고 강경문 외 199 (별지 원고 기재와 같음.)

원고들의 소송 리인 (별지 리인단 과 같음.)

서울 서초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6층

: 02-582-0606, 팩스:02-596-8004

고 국방 장관

서울 용 이 원로 22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 무효

청 구 취 지

1. 고가 2007 평택 오 군기지(K-55) 2활주로 건설계획에 하여 한 연합 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 은 을 인한다.
2. 소송 용은 고가 한다.

는 판결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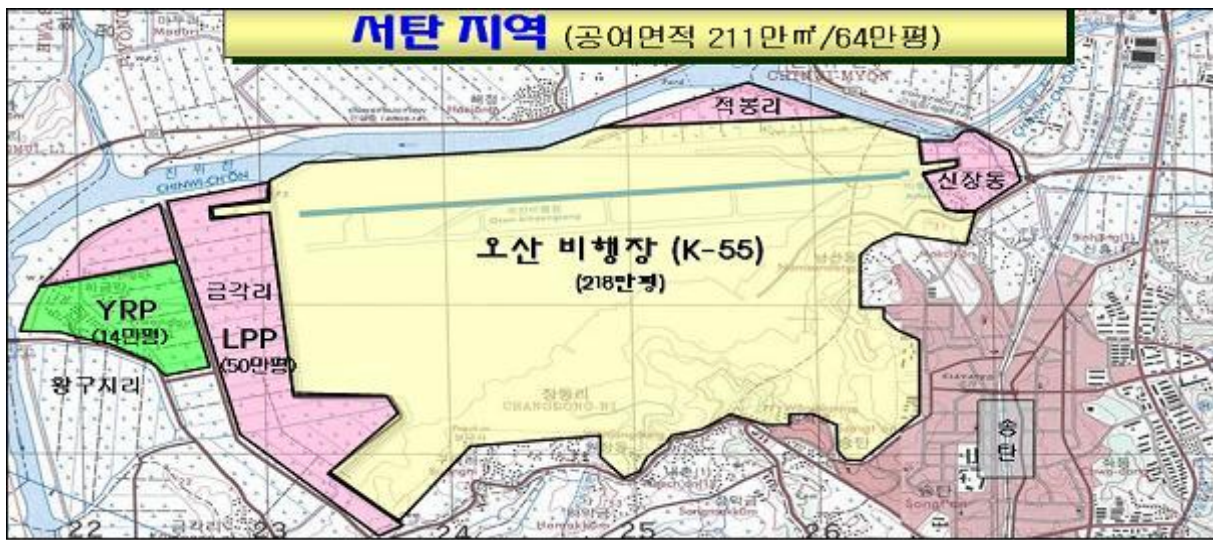
청 구 원 인

1. 기초적 사실관계 -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내 제2활주로의 건설 및 시설물의 설치와 당사자 관계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 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가. 평택 오산공군기지 내 제2활주로의 건설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한·미 군은 2006 연합 방위력 증강사업(CDIP)으로 평택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K-55) 내에 기존 활주로와 평행한 제2활주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의 토지 력계획(LPP)에 의해 취득한 오산 비행장 북쪽 외곽지(그림 1의 리)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 에 패트리엇 포, 발칸포, 레이다 시설 등을 이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갑 1 증, <그림 1>참).



<그림1>

나.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평택시가 한 기 소음·진동 사용 결과보고서상 75WECPNL 이상의 소음영향 지 에 주하고 있 , 2활주로가 건설되어 운 행 경우 75WECPNL 이상의 소음영향을 받 지 에 주하는 자들입니다 (갑 2 증의 1, 2 참).

고는 이 사건 2활주로 건설 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으로 시 행하는 것의 승인 자입니다(갑 3 증 참).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 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2. 제2활주로 건설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으로 실시할 것을 승인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의 무효사유

가. <그림1>의 북쪽 삼각형 적봉리 부분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특별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미 실시 및 LPP협정 위반

(1) 이 사건 처분은 평택특별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고 이루어 졌습니다.

평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3.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4.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에 대한민국의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8.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용을 열람하^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수신}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 "국제화계획지구"라 함은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개정 2008.3.28>) ①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08.3.28>

위 <그림1>의 북쪽 삼각형 리 (이하 '리' 이 고 합니다)
은 주한미군지위 정 2 의 정에 의하여 한 국이 미합중국에 주한미군
의 사용을 위하여 한 ' 여 '이며, 위 에 2할주로 건설을 위해 패트
리어트 포, 발칸 포, 레이더 시설 등의 새로운 시설 을 설 하는 것은 평택특별
법 2 4 다 에 해 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에 해 합니다. 그 다면 평택
특별법 6 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하여 하고, 그 시행 시기는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 1] 13 특정지 의 발사업 다 . 평택특별법에 따른 주
한미군기지 시설사업에 해 하여 시계획 승인 에 이루어져 에도 평택특
별법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시하지 않았습니다.

따 서 이 사건 처 은 위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시하지 않은 하자를
과하고 이루어졌고, 그 하자는 중 . 하므로 고 것입니다.

(2) 이 사건 처 은 한·미 의 토지 력계획(LPP) 위 사 을 과하고
이루어졌습니다.

리 은 미 군 탄약고 이 지와 행정 리 보, 인 주
들의 원 해결 등을 위해 한·미 합의하여 한·미 의 토지 력계획(LPP,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
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이하 'LPP 정'이 고 합니다) ' 지 ' (6)에 의 미군에 여하기
로 한 것입니다(갑 4 증 참).

LPP 정 다. 지 3. 기준 은 "어느 경우에도 지
의 표는 이러한 에서 받을 으로 국 을 보 하기 위 "이 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면 LPP 정상 지 으로 여된 지 은 그 여
상 기존의 시설 외에 신 로 군사 시설을 건설 수는 없다고 보아 것
이며, 로 2006 주한 미군기지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에서도 서탄지
는 자연 상 로 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갑 5 증 참).

따 서 리 에 새로운 시설 을 설 하는 것은 LPP 정 위 이며,
이 사건 처 은 이러한 정 위 사 을 과하고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는 중 . 하여 입니다.

나. 제2활주로 건설 부분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 미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절차 무시

(1) 이 사건 2활주로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하여 합니
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16 는 국방·군사시설의 설 사업
과 관련하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 법 2 1 에 따른 군사기지에서
시행되는 1) 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
업으로서 사업면 이 20만 곱미터 이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상이 되며 기
본설계 승인 에 환경영향평가서 출하도 정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법」 23 는 "이 법은 「헌법」에 정된 에 따 한 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하여도 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 한 국과 아메리카합중국 의 상 방위 약 4 에 의한 시설
과 및 한 국에서의 합중국 군 의 지위에 관한 정의 합의의사 」 3
2 은 " 한 국 정 와 합중국 정 는 1953 상 방위 약에 의한 한
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 의 중요 을 인 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
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정 는 자연환경 및 인 건강의 보 에 합되는 방 으로 이 정을 이행 것 을 약하고, 한 국 정 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인한 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2활주로는 길이가 9000 트(2,743m)에 이르는 한 도로, 이것이 건설되어 운영 경우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주변지 주 들에 미 는 영향은 이루 말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는 측의 원을 넘어서 한 연 결과로 시되어 있는바, 평택시가 시한 소음·진동과 관련한 사용 결과 보고서에는 “향후 이 지 의 장애 기 운 횡수의 증가에 따 활주로 증설 및 연장이 시 경우 기 소음의 영향도가 지 되며 따 서 주변지 의 소음영향 면 도 연 증가 것이다” 고 기재하고 있습니다(갑 2 증의 1 참). 그 다면 위 관련 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2활주로 건설과 관련해서도 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하여 것입니다. 로 미군은 미군 기지에 활주로를 건설 때 다양한 원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하고 있습니다(갑 6 증 참).

그 예도 하고 이 사건 2활주로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시 하지 않은 로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 처 은 이를 과하고 이루어 졌고 그 하 자는 중 · 하므로 입니다.

(2) 이 사건 처 은 지방자 단 장과 의하여 하는 없이 이루어 졌습니다.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5.31>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3.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4. 진지(陣地)구축시설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 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5.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部隊)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협의 및 고시등) ①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협의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사건 2할주로는 군사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상의 국방·군사시설에 해 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방 장관의 승인이 있기 에 위 법 5 1 에 의해 지방자 단 의 장과 의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 , 이 사건 사업의 승인 자인 고는 평택시장과 혀 의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하 고, 이에 해 평택시의회는 “군용 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 음 책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정과 일방 인 오 미 군기지 가활 주로 건설을 하는 결의문”을 택하기도 하 습니다(갑 7 증의 1, 2 참).

따 서 이 사건 처 은 의 의 위법을 과하고 이루어졌고, 그 하자 는 중 · 하여 입니다.

4. 결론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 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결국 이 사건 처 은 평택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하지 않고, 지방자 단 장과의 의 를 한 , LPP 정 위 사 을
 과하고 내 졌고, 그 하자는 중 · 하므로 입니다.

입 증 방 법

- 1. 갑 1 증 7 군 보고서
- 1. 갑 2 증의 1 평택시 기 소음·진동 사용 결과보고서
- 2 기 소음지 방음시설 설 기준 수립 최종
보고서(2009)
- 1. 갑 3 증 한·미 연합방위증강사업 발 방향 소 - 합동
참모본
- 1. 갑 4 증 국방 정보 회신
- 1. 갑 5 증 주한미군기지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
- 1. 갑 6 증 미군의 하와이 기지 활주로 건설 시의 환경영
향평가서
- 1. 갑 7 증의 1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에 따른 K-55내 2
활주로 건설관련 평택시 의서
- 2 K-55 2활주로 건설에 따른 책요 - 평택시

첨 부 서 류

- 1. 위 갑 증 각 1
- 1. 소송위 장 각 1
- 1. 납 서 1

※ 이 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문내
 용을 열람하 인에 수 없습니다. 이 문이 잘못 수신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2010. 4. .

위 원고들의 소송 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변 사 심 재 환

변 사 정

변 사 김 승 교

변 사 하 주 희

서울행정법원

귀중